

4 재정운용계획

4-1. 성인지 예산현황

-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 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-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중구의 2016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 분	사 업 수	예 산 액
총 계	31	6,632
여성정책추진사업	3	652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28	5,980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	0	0

▶ 당초예산 기준

●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여성능력개발교육,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?

-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,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.
- 정보화교육, 지역정보화 촉진, 공무원 교육훈련,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4-2. 주민참여 예산현황

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,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 자치센터 토론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.

-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중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당초 세출예산	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	모 델
192,616	157	1안

▶ 2016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

표준모델

구분	모델안 1	모델안 2	모델안 3
총칙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군수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
운영계획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
위원회	제10조(위원회 운영 등)	제10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) 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제12조(위원회 구성)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제14조(연구회 운영 등)	제10조(위원회 구성) 제11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 제12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 제13조(기능) 제14조(운영원칙) 제15조(분과위원회) 제16조(회의 및 의결) 제17조(회의록 공개의 원칙) 제18조(해촉) 제19조(의견청취) 제20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제21조(주민참여 등 홍보) 제22조(위원에 대한 교육) 제23조(재정 및 실무지원) 제24조(시행규칙)
지원 기타 부칙	제11조(시행규칙) 부 칙	제15조(시행규칙) 부 칙	제24조(시행규칙) 부 칙

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사업명	예산반영액	비고
계		156,900	
전략경영실	방범용 CCTV설치 (동성로2길 12-2~12-24구간)	12,000	신규사업
	방범용 CCTV설치(남산로7길 99-7일원)	10,000	"
행정지원과	방범용 CCTV설치(남산로1길 114일원)	10,000	"
	동성로일원 보안등에 국기꽃이 설치	4,200	"
생활지원과	소외계층 예식상담 및 지원	30,000	대구시 추진
녹색환경과	불법쓰레기단속 CCTV설치(남산로1길 132)	4,000	신규사업
	중구 전역 고화질 불법 쓰레기 단속용 CCTV 설치	50,000	"
건설안전과	보안등 설치(동성로1길 46-2일대)	300	"
	인도블럭 교체(동성로2길 2)	2,500	"
	가로수 뿌리 정리 후 인도블럭 교체 (남문네거리~향교)	기간제 근로자활용	"
	남산그린타운 정문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 터 닦추기	400	"
교통과	반사경 설치(남산로1길 35외 1개소)	1,500	"
동인동	동주민센터 화장실 리모델링	9,000	"
	동주민센터 자치센터프로그램실 방음창 설치	13,000	"
성내3동	청사환경개선 및 2층 방수공사	10,000	"

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.

<http://gu.jung.daegu.kr/new/pages/administration/page.html?mc=1754>

4-3. 성과계획서

-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-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중구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실국명	성 과 계 획				예 산 액		
	전 략 목표수	정책사업 목표		단위사업수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 교 증 감
		개 수	지표수				
합 계	9	57	116	127	186,174	171,542	14,632
기획예산실	1	1	3	8	6,337	4,703	1,634
전략경영실	1	3	5	11	36,880	34,838	2,042
도심재생지원단	1	2	2	2	882	753	129
행정지원국	1	11	24	26	8,951	6,804	2,147
복지문화국	1	24	43	41	90,509	82,954	7,556
도시관광국	1	13	31	23	22,946	24,164	-1,218
보건소	1	1	2	12	8,966	7,910	1,056
봉산문화회관	1	1	3	2	2,760	1,611	1,149
의회사무과	1	1	3	2	1,356	1,285	72

▶ 당초예산, 일반+기타특별회계

4-4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- ▣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 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.
- ▣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,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%)

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	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	자체사업 비율	보조사업 비율	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
31.08	49.27	44.23	14.68	56.88	80.46

▶ 당초예산, 일반회계 기준

4-5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자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천원)

항 목 별		기 준 액 (A)	예산편성액 (B)	차 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 체 장	58,300	58,300	0
	부단체장	40,700	40,700	0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262,000	215,300	-46,700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통경비	39,600	39,600	0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48,400	48,400	0
	의원국외여비	22,750	22,750	0
지방보조금		1,260,495	968,470	-292,025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639,270	639,270	0
*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1,492	1,217,400	-
**공무원 일·숙직비		60	171,840	-

*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기준액 : 1인당 평균

** 공무원 일·숙직비 기준액 : 1일·야당

- 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자치부)'을 참조 하세요. <http://lofin.moi.go.kr>

4-6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

-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(세출 효율화)과 기준재정수입액(세입 확충)에 반영한 금액으로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됩니다.

4-7.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

- 2015 회계연도에 우리 중구가 지방교부세 산정시 감액된 현황은 없습니다.

4-8.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

- 2015 회계연도에 우리 중구가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로 증액된 현황은 없습니다.